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11. 26(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
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17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4. 3. 26. 공포 및 2024. 9. 27. 시행)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3항 신설)
- 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3항 신설)
- 2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대부 등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다만,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이 무상 대부,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은 금천구가 공동으로 누려야 되는 재산이기에 그 집행에 있어 공익에 어긋남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

관계법령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13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26.]